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2. 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목 차

I. 개 괄

- 1. 제도개요 1
- 2. 운용방향 9

II. 투자사업 심사

- 1. 심사대상10
- 2. 심사제외 대상사업 16
- 3.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19
- 4. 심사기관 20
- 5. 2단계 심사 23
- 6. 재 심 사 24
- 7. 투자심사 기준 26
- 8. 투자심사 절차 30
- 9.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39
- 10.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 41
- 11. 주요 일정 42

III. 타당성 조사

- 1. 개 요 43
- 2.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대상 44
- 3.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48
- 4. 타당성 조사 절차 49
- 5.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 53

IV. 투자사업 이력관리

1. 개 요	56
2. 절차 및 주요 내용	58
3 이력관리 전문기관	65

V.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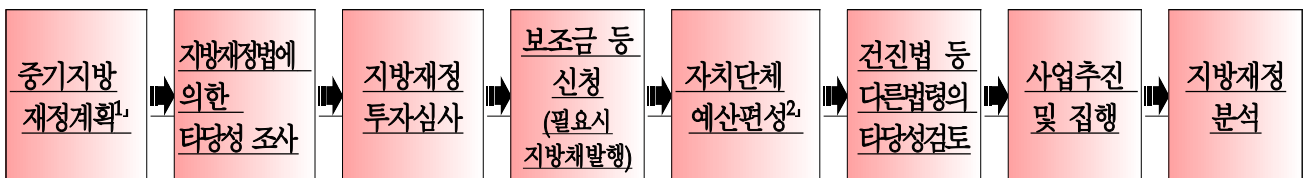
참고1. 투자사업 분야 · 부문별 분류	67
참고2. 작성 서식	77
참고3. 관련 법령 등	143
참고4. 지방재정영향평가	171
참고5.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190
참고6. 문화체육시설 관련법률	197
참고7. 고용효과산출 관련자료	202

1 제 도 개 요

1 개 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써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 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1.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2 목 적

-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3 연 혁

- 「지방재정법」 제30조③·④ ('94.12.22. 조문신설)

- 지자체장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②~⑤ ('95. 5.16. 개정)

- 심사대상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심사 의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 ('01. 9.15. 개정)

- 중앙심사위원회(15인 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설치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01. 4. 6. 개정)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시·도 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중앙심사 200억원 이상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02.11.29. 개정)

- 10억원 이상 행사성·2이상의 시·도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05.12.30. 전부개정)

-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자심사대상을 확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의뢰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임의조항
- 건축 관련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한도상향(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06. 3.14. 개정)

- 기초단체 행사성사업의 총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5억원~10억원 시·도 의뢰심사, 10억원 이상 중앙심사), 하반기 투자심사일정 조정 등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08. 8.14. 개정)

- (일반투자사업) 시·군·구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중앙심사 300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시·군·구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시·도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중앙심사 3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09. 2. 9. 개정)

-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사업은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09.11. 2. 개정)

- 시·도 및 시·군·구 투·융자 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시·군·구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4조 ('10.12.20. 개정)

- 자치단체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시·도) 또는 5억원 이상(시·군·구) → 5억원 이상(시·도) 또는 3억원 이상(시·군·구)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생략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10.12.31. 개정)

- 행사성사업의 자체심사 범위 구체화
 - 시·도 :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시·군·구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정기심사횟수확대 : 연 2회 → 연 3회
- 청사신축사업은 투자심사 의뢰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 첨부 의무화

○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 (’11. 3. 8 조문신설, ’12. 1. 1. 시행)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편성불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65조의 4 (’11. 9. 6. 개정 및 조문신설)

- 자치단체 홍보관(弘報館)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범위 확대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시·도) 또는 3억원 이상(시·군·구)
-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12. 1. 1 시행)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도) 또는 20억원 이상(시·군·구)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11. 9.29. 개정)

-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
 - 시·군·구 심사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시·도 심사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중앙심사 : 30억원 이상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안전행정부령, ’13. 6. 5. 개정)

-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3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중앙)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
 - 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14.5.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 용어변경(투·융자심사 → 투자심사)
- 투자심사의 대상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포함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됨(제37조제2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규정(제37조의2제2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제33조제3항제9호)

○ 「지방재정법 시행령」 ('14.11.28. 개정, '14.11.29. 시행)

-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는 10억 → 40억으로 시·군·구는 5억 → 20억으로 상향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4.11.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 부령 명칭변경(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3회 → 4회로 확대
- 재심사 기준을 기존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확대하되,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함

$$*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20/100 + 150\text{억원}$$

-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가
- 타당성 조사 제출서류, 절차,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제외대상 등 추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40억→100억 미만)
 -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
-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 타당성 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6.3.30 개정·시행)

-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근거 명확화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6.6.30 개정·시행)

- 시·군·구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3억~5억 - (개정) 1억~3억
- 시·도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5억~30억 - (개정) 3억~30억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7.12.29. 개정·시행)

-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중앙)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투자심사 의뢰심사 심사횟수 조정
 -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 투자심사 「일자리창출」 항목 신설
 -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언·권고'
 -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권고 실시
- 중앙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
 -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등
-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9.5.17. 개정·시행)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확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11.1. 개정·시행)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확대 실시
 - 매년 3회에서 매년 4회로 확대 및 시기 조정
 - (투자심사) 3월, 6월, 10월 ⇒ 2월, 5월, 8월, 10월
 - (타당성조사) 3월, 6월, 10월 ⇒ 1월, 4월, 7월, 10월
-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자원의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4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가 등

2

운용방향

□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재정낭비 최소화

□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문별·연도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
-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심사의 객관성 확보

□ 각종 재정계획과 연계 운영

- 국가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 극대화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 사후평가 강화

- 자치단체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도모

1

심사대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개 념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의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

※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낙찰차액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예비비(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상세한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과 공연장 등 개관준비금도 포함됨

※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 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경우 그 가격을 포함)을 총사업비에 포함

□ 범 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의미
 -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정·고시된 개발계획을 1건의 사업으로 봄
 - ※ 단, 동일부지내 단위사업별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봄
-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 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단,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 등은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포함(R&D 사업 등)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 제외

ex) 노후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임차료 등

※ 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2)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 행사성사업의 범위 >

①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각종체육대회행사 ⑥교양강좌 ⑦각종기념
행사 ⑧지자체주관 국제행사 ⑨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3) 홍보관 사업

○ 자치단체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보며, 복합 시설물인 경우에는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자치단체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용(공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되며,
 - 복합 시설물인 경우에는 청사가 연면적의 25% 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단,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는 상급기관 의뢰심사(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를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관은 총사업비 및 전액 자체재원 유무에 따라 구분 적용

(5) 문화·체육시설 신축

- 문화·체육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이 해당되며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 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신축범위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 적용)
- * 동법 제2조다목의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사업별 투자심사기관은 상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 적용)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됨
- 예산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확약(소위 ‘책임분양’), ‘토지 리턴제 확약’ 등과 같이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됨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 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및 협약 사항 등은 별지서식 제1호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분석 의뢰서'의 '자. 기타'란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 ※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후 금액증액, 기간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시에도 심사대상에 포함

2

심사제외 대상사업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 복합시설은 제외함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를 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업,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 공유재산, 용역비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
-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받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

투자심사 제외 사업

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10호에서 명시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심사 제외 가능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 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3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
 - ※ 사업계획·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사업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 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등 구체화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
 -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심사시기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중앙(시·도) 투자심사 일정

구 분	의 례	심 사
제 1 차	1. 1.(전년도 12.15.) 까지	2월말 까지
제 2 차	3. 31.(3. 15.) 까지	5. 31. 까지
제 3 차	6. 15.(5. 31.) 까지	8. 15. 까지
제 4 차	8. 25.(8. 10.) 까지	10. 25. 까지

※ 심사는 4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4

심사기관

□ 자체심사 (자치단체별)

< 시·군·구 >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재원 투입)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 자치단체는 참여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크거나, 사업부지 소재지 시·군·구로 선정. 또한, 동 자치단체는 투자심사 결과를 공동사업주체인 타 자치단체에 공문 통보 조치

* 자체재원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와 상급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조정교부금(보통, 특별), 지방소멸대응기금(다만, 시·도에서 시·군·구로 교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포함, 재원부담 주체가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지방비(자체재원)로 대체, 지자체에서 자체 조성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용자(내부거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금은 지방채로 봄(이하 공통)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시·도 >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의뢰심사 (사·도 및 중앙)

< 사·도 심사 > : 시·군·구 사업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 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 심사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중앙 심사 >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시·도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시·군·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시행주체 및 심사기관 판단> —

-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 자체재원 이외의 자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
 - 국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5

2단계 심사

□ 개 념

- 당초 심사 및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이 경우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공사계약과 관련없는 설계비, 보상비 등 집행은 가능

□ 대 상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심사시 조건에 2단계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

6

재심사 (심사규칙 제6조)

□ 개념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사업

□ 심사 시기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

※ 계약 : 주계약은 본 공사계약을 의미(용역계약,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 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다만,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대상

- ①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times 20/100 + 150억원$$

※ 예시)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600억원인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증액분 400억원 중 토지손실보상비 150억원)

⇒ 증가한 사업비 250억원(400억원-150억원)이 재심사 산식에 따른 170억원 ((600억원 - 500억원)×20/100 + 150억원)보다 크므로 재심사 대상임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범위는 60%

③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④ (재원계획변경)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⑤ (사업부지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

⑥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심사 기관

- 지방재정 투자사업 총사업비 기준금액별 심사기관

7

투자심사 기준 [심사규칙 제2조]

□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부담 (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 사업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예) 도로포장율,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율 등
- 일자리 창출 효과 : 직접·간접고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

□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종합적인 평가 · 분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 승인, 영향평가실시 등 사업시행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기타 국내·외 경기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참조

〈 참고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

평가 지표	비 고
① 사업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사업인가? ▪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2조) 	*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 부담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 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② 사전절차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 시행(의무적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 여부) 	*미이행시 타당성 조사 실시조건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③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권·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
④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가? 	*‘수혜주민수 / 전주민수’ 로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가? 	*‘직접·간접고용효과’ 로 계량화 (사업추진, 운영단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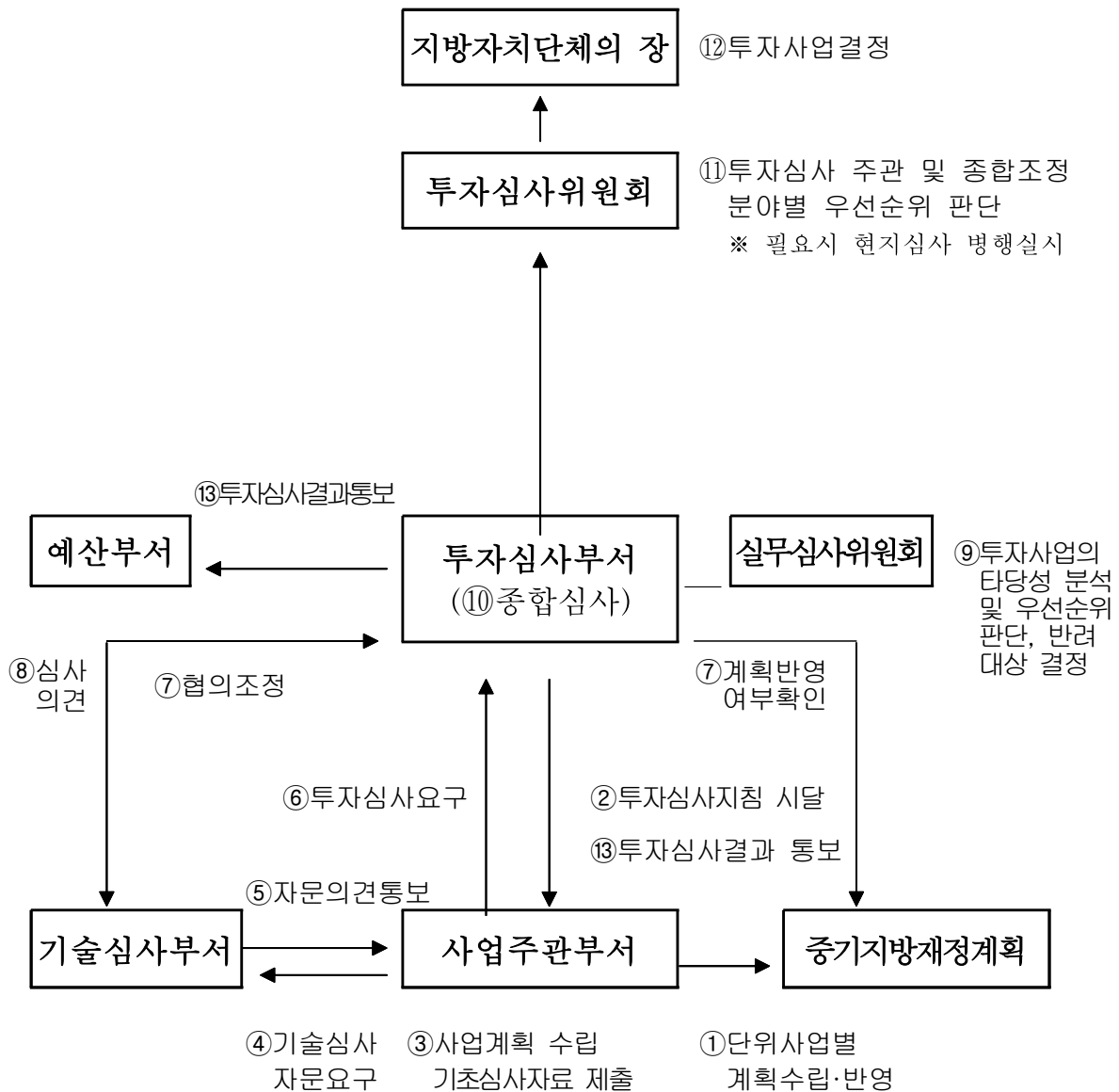
[5] 사업의 시급성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관사업 추진 상황 등 고려
[6] 사업 타당성	
▪ 사업규모는 적절한 수준인가?	*전국 또는 유사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절한가?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 여건 범위 내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 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 경제적 타당성(B/C)이 있는가? 또는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가?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 검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B/C 분석에서 비용이 과소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 기타 재원조달계획은 적절한가?	*[민간자본] 민간자본 협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7]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 법적인 제약사항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조치

※ 당해 체크리스트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 가능

8 투자심사 절차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이 속한 회계단위로 부여
- 개별사업 투자심사시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심사 병행 실시
- 사업비의 재원 및 성격에 따라 자체심사와 시도 및 중앙의뢰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충분한 심사 실시

<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



1]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 주 관 : 사업 주무실·과 또는 사업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공사, 토지매입, 조경, 설계 등으로 구분
-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작성
(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기술심사부서의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예비비10%를 포함)

- (조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 (조사시기·방법) 사업계획 수립 후 '별지서식 제5호 타당성 조사 의뢰서'로 행정안전부에 신청

- (조사내용) 사업추진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 (제출방법) 투자심사 의뢰 시 첨부서류로 제출
 -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시 검토 사항

①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 (심사규칙 제4조제3항제4호)

- (대상)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또는 의회청사 신축사업
- (방법)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시 검토.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기준을 준용
- (내용) ①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환경 여건(주변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⑤기타(기존시설 활용방안)

②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사무공간 및 주민문화공간은 최근 3년간 신축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평균 규모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과되지 않도록 신축
- (공사비)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비용 산정

② 자체 투자심사의 실시

가. 기초심사자료의 작성

- 주 관 : 사업주무국(과)
- 중점검토 및 조치사항
 - 1차 : 타당성 조사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 2차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 여부를 확인·보완
 - 3차 :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부여

※ 검토사항 : ①사업규모, ②공법 등 기술사항, ③사업비, ④재원조달계획, ⑤시설운영계획(조직, 관리·운영비 등) 등

나.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사업주무실과 등에서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내용, 규격 등을 완비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심사부서에서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의뢰서류를 반려조치할 수 있음
 - *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
-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 서식에 맞게 6하 원칙에 의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단가 등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

다. 사전실무심사

기초심사 자료작성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하여 사전실무
심사를 실시

(1) 실무심사 절차

- 주 관 : 투자심사담당부서
 - 심 사 자 :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심사부서, 관련부서공무원 등으로 적의 선정
 - 심사방법 : 사전심사항목별 조서(별지서식 제2호)
 - 심사시기 : 기초심사 자료작성이 완료되고 위원회 심사실시이전
 - 심사결과조치
 -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부서
에 반려조치 가능
- ※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

< 사전 실무 심사시 중점고려사항 >

-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사업시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

(2) 실무심사시 조치사항

① 민자유치사업 투자자의 능력판단

투자사업비 재원 중 일부가 민간자본으로 조달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실시

○ 심사에 필요한 공통 제출서류

- 민간자본이 포함된 모든 투자사업은 「민자유치 협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투자심사 의뢰시 제출하여야 함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가) 민자유치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미만인 경우

- 실무심사부서에서는 「민자유치 협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정밀하게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①유치가능 ②유치곤란 ③판단곤란 등으로 분류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나) 민간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 심사기준(별지서식 붙임3)에 의하여 실무심사에서 심사
- ①적정(평점 60점 이상), ②불투명(60점~40점), ③확보곤란(40점 미만)으로 분류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

② 현지실무심사

투자사업 중 아래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심사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

○ 대상사업

-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 기타 현장을 확인해야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지심사자

- 투자심사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 관련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 현지심사시기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이전

< 현지 심사시 고려사항 >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요인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기타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라. 지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 관 : 투자심사 담당부서

< 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함
 - ※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며,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함
 -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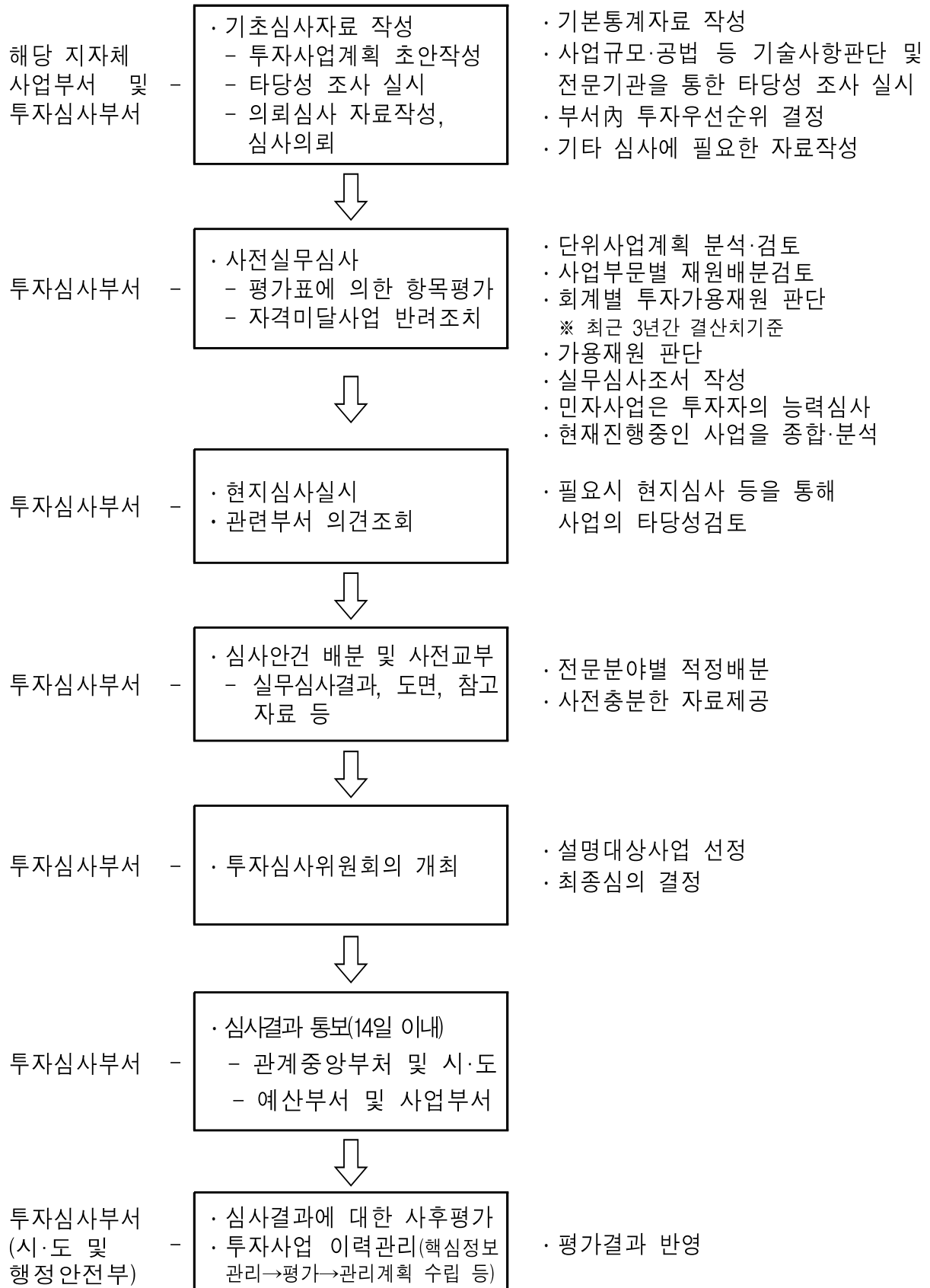
○ 심사안건의 심사위원회 개최 전 교부

- 심사안건은 전문분야별로 해당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 실무심사자료, 도면, 기타 필요한 자료는 심사개최일 이전에 교부하여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
 - ※ 심사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공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심사시에는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적의 선정하여 관련 사업부서에서 참석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토록 기회제공
- 최종 심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위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가능
 - ※ 심사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 주민생활 밀접지역 사업, 주민피해 우려사업 등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지심사 실시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9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 투자심사 의뢰

가. 정기 심사

- 시·도의 경우에는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나. 수시 심사

-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투자심사의 시기

- 1차 심사는 2월말일까지 실시하되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심사시기에 의뢰
-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기 심사 이외에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수요에 따라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대상)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반투자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생활 SOC 확충사업, 2단계 심사 사업 등
 -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지정), 특별재난지역(행정안전부지정)
 -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 4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
- 통보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경유)
 - 재원지원, 사업계획 승인, 지방채발행을 승인하는 관계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10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투자심사 내실화 도모

□ 평가 개요

- 평가시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자치단체 교차평가 또는 자체평가
-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자치구
- 주요평가항목(예시)
 -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예산액/적정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건수·금액/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금액/심사건수·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건수·금액/조건부 사업수·금액) 등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심사 대상건수·금액)
 - 총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 평가대상사업 : 최근 3개년 투자심사사업

□ 평가반 구성

-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 평가실시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투자심사결과 반영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한 자치단체는 재정패널티 부여 등 제재조치 부여

11 주요 일정

□ 투자심사 일정

○ 의뢰심사서류 제출기한

- 시·도의뢰심사(시·군·구 → 시·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전년도 12월 15일까지	3월 15일까지	5월 31일까지	8월 10일까지

- 중앙의뢰심사(시·도 → 행정안전부)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1월 1일까지	3월 31일까지	6월 15일까지	8월 25일까지

- 수시심사 : 심사일 기준 40일전까지

○ 투자심사

- 정기심사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2월 말일까지	5월 31일까지	8월 15일까지	10월 25일까지

- 수시심사 :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서는 시기 적의 선정 실시(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

○ 제출서류 :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및 매뉴얼에 의한 각종 서류 등

□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단체별 제출시한(※ 수시심사를 감안하여 시한 연장 가능)

- 시·군·구 → 시·도 : 12월 20일까지

- 시·도 → 행정안전부장관 : 12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4호)

III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Test)

1 개요

□ 개념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타당성 조사결과는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관계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 기능
 - 타당성 조사는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자원조달능력 등 투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반영여부를 제출
 -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2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대상

□ 타당성 조사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투자 심사 대상 신규사업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 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 ①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에 반영 가능
 - ②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반투자사업, 지역전략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
 -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지정), 특별재난지역(행정안전부지정)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함

- (대상) 지역전략산업, 노후산단 등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건립 (지자체 시행), 환경시설 대보수, 청사신축 등

※ 단, 복합시설물로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타당성 조사로 수행

- (기간)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분석범위에 따라 조정 가능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투자심사에서 적정, 조건부 추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한 경우 「2차 타당성 조사」를 수행

- 2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행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정기관*에서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단순 부동산 또는 동산 매입사업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
 - 가로등 또는 신호등과 같은 개별 시설 구매 후 설치사업
- ※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는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추진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출, 현물출자, 보증 또는 예산외의무부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필요성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재조사 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다만,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투자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times 20/100 + 150억원$$

- 투자심사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조사 면제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 이 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3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전문기관 개요

-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의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개소('14.12월)
 -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개정('14.5.28)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규정은 '14.11.28.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미적용(기준: 입찰공고일)
 - 단, 자체 선정된 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대상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1호 및 2호의 기준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사업으로 보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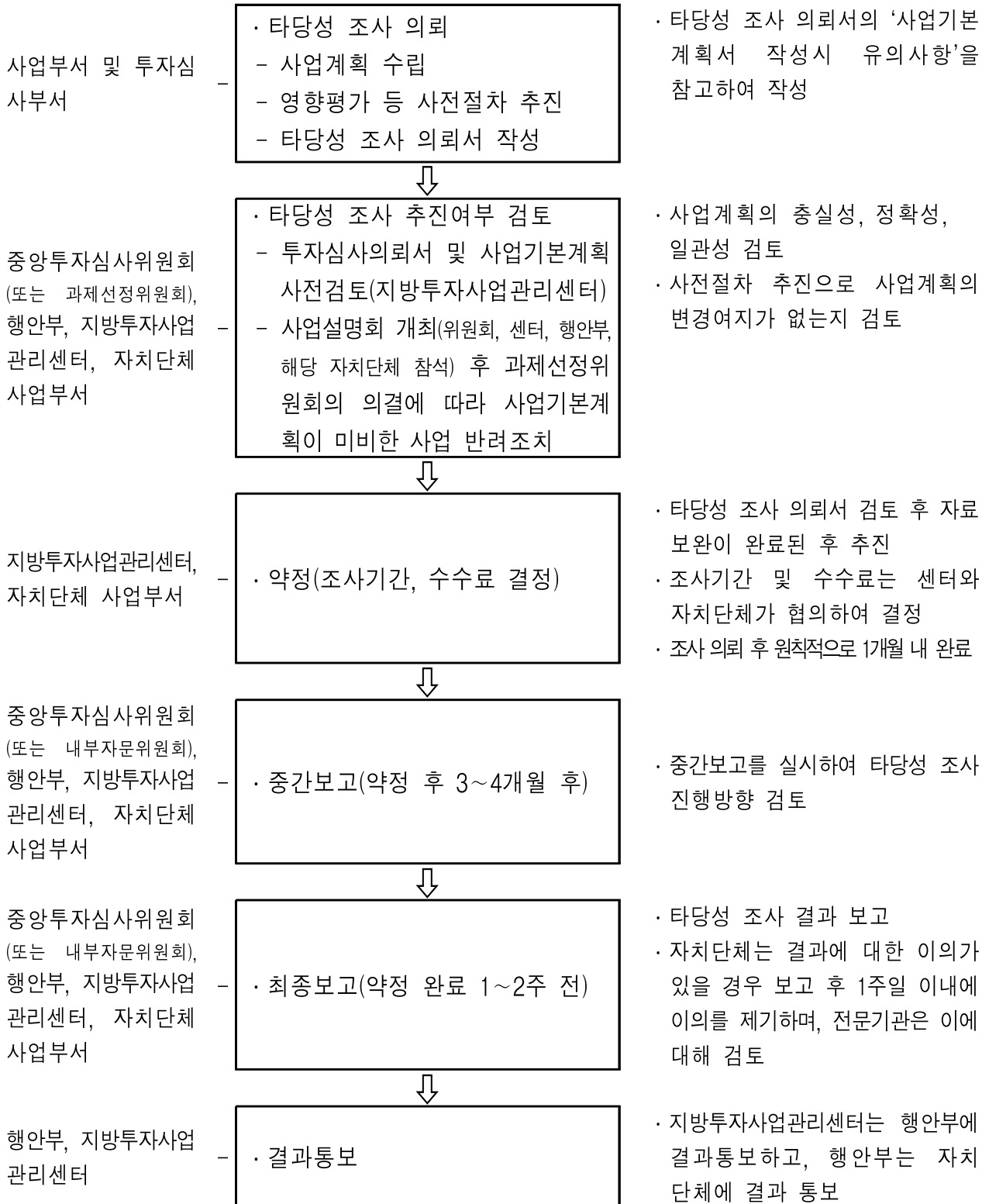
□ 업무범위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재조사
 -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사업 이력관리
 -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뢰된 타당성 조사와 관련 있는 용역(제도개선, 사업계획수립, 실시설계 포함)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4

타당성 조사 절차

타당성 조사 추진 절차



□ 신청 및 계약

- (시기) 사업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 타당성 조사 의뢰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사업기본계획 등) 필요
- (신청) '[별지서식 제5호]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

- 정기 신청

신청 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시·군·구 → 시·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9월 30일
시·도 → 행정안전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15일

- 수시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
- (약정) 행정안전부는 신청받은 즉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체결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사업기본계획 등이 부실하여 타당성 조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반려가능
 -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로 계약위탁 의뢰 가능
 - * 계약체결시 과업의 범위는 매뉴얼 '5.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53~55p에 한정)
- (비용)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약정하는 경우 조사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
 - 행정안전부로 위탁의뢰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절차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기간)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가능
 -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수요·편익 분석자료, 비용 등과 관련된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조사내용 검토 및 결과통보

- (검토) 조사 개시 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확정함
 - (중간보고) 조사 개시 3~4개월 후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실시
 - (최종보고) 약정완료시까지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실시, 자치단체는 최종보고 후 1주일 이내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조사완료
-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 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5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

□ 타당성 조사 분석내용 및 추진절차

- 타당성 조사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사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
- ① 사업계획서 검토 ② 경제성 분석 ③ 재무성 분석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⑤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①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 조사 의뢰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② 경제성 분석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주요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을 도출

③ 재무성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실시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⑤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 타당성 조사 추진체계

- 전문기관은 효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연구자로 PM(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 전문기관은 외부연구진 구성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연구진 선정 및 관리절차'(가칭)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외부연구진을 운영해야 함
- 전문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가능

□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 타당성 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지침, 조사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검토 절차 등을 운영
-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①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경제성 분석 시 유의사항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기재
- 사회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② 재무성 분석 : 현금흐름할인법(PI, FNPV, FIRR) 시행

< 재무성 분석 시 유의사항 >

-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을 기재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③ 정책적 타당성 분석: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 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 '14.11.28.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의뢰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 투자심사 의뢰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또는 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에 따라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

□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용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의 투자사업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서면심의 금지) '투자심사결과보고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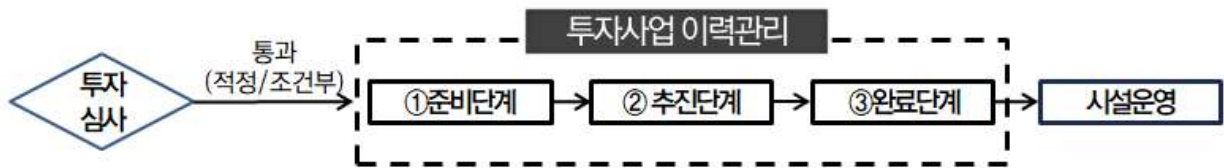
1 개요

□ 개념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지방재정법 제37조) 실시
 - 그러나 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심사 시의 사업내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 및 관리 불가능한 실정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의 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운영손실 과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 투자사업 단계별(①준비단계→②추진단계→③완료단계) 사업정보를 기록·관리해 자치단체 스스로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제도임
- ※ 사업정보 : 하나의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 및 수집되며,
 ①준비단계(투자심사 통과 기준) ⇒ ②추진단계(투자심사 통과 후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기준) ⇒ ③완료단계(사업 준공 기준)로 이루어 짐
-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 사업위치, 투자심사결과(적정 또는 조건부), 조건 이행 여부, 사업량 및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자원조달 등
- ① 준비단계 정보 : 투자심사 통과 시점의 사업정보(일정, 총사업비, 자원조달계획 등)를 의미하며 추진(완료)단계 정보와 비교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을 위한 기준 자료를 말함

- ② 추진단계 정보 :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단계의 사업정보로서 추진하는 과정 상의 정보를 말하며, 매년 1년간 실제 집행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작성함
- ③ 완료단계 정보 : 사업준공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정보를 의미함

< 이력관리 단계 >



□ 대 상

- 아래 사업 중, 투자심사가 통과(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 '13년부터~)된 사업
 - ①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자체심사 포함)
 - ②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 ※ 투심 통과 후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재심사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종 심사 기준으로 사업정보 작성

2

절차 및 주요 내용

□ 업무 수행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의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행안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음
- 또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업무 수행 절차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구분	절차	수행주체
①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 정보 제출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 추진단계 정보 제출 ※ 결산 기준 추진내용 반영 ■ 자기진단 결과 작성 ※ 자기진단 기준 토대로 작성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행안부(LIMAC)
② 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행안부(LIMAC)→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LIMAC)→중투위 보고
③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지자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 재심사 대상 사업 공개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 공개 	행안부(LIMAC)

① DB구축 단계

가. 사업정보

○ 사업정보 DB 구축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 준비단계 :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심사 통과 사업(2020년 이력관리 기준, 2019년 심사 통과)
- 추진 및 완료단계 : '13년부터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2020년 이력관리 기준, 2013~2018년 심사 통과)

- (작성기준)

- 준비단계 :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 추진단계 : 전년도 결산 기준(2020년 이력관리 기준, 2019년도 결산)
- 완료단계 : 준공 시점 기준

- (작성내용)

- 준비단계 : 총사업비, 일정,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 주요정보
- 추진 및 완료단계 : 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주요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사업 중단시 중단 사유(예: 재심사,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취소 등)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주체)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검토사항)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검토 및 미제출 사업 확인

- (조치사항) 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보완 요청 → 재제출 사업정보 검토 및 최종 확정

<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 >

[1단계] 준비단계	[2단계] 추진단계 / [3단계]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 사전절차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 지방채 관련 정보 	<p>※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하 되,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 제 집행내용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 : 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 자체평가 정보 ▪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 상세 내용은 배포된 양식 및 가이드라인 참조

나. 자가진단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방법)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 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①~⑨번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진단결과를 매년 추진단계 사업정보와 함께 제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구 분	항 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2 자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사업내용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사업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 변경 사업
기타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⑥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2] 사업검토단계

- (주체)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검토대상) 추진단계 사업
- (목적)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중 계획의 변경 여부 및 사유를 검토하고, 쟁점사항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가. 중점관리사업

-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
 - 사업비 변동 외에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발생한 사업, 이로 인해 일정을 비롯한 사업내용 및 규모가 변경된 사업,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 등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결정

○ (중점관리사업 선정 절차)

-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검토(LIMAC)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행안부, LIMAC) ⇒ 선정 결과 통보(행안부)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지자체) ⇒ 소명 자료 검토(LIMAC) ⇒ 중점관리사업 선정(행안부) ⇒ 중투위원회 보고 ⇒ 최종 확정

나. 기타 관리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외에 정보 관리가 필요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여부 및 내용 검토

○ 취소 및 중지사업

- 투자심사 이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잠시 중지된 사업의 목록 및 취소/중지 사유 확인

○ 재심사 사업

-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및 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 사업 여부 검토

3 사업관리단계

가. 중점관리사업

○ 자체관리계획 수립

- (대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된 사업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작성 및 제출, 행안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자체관리계획 내용)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 사업 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 2016년에 배포된 '자체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 자체 관리계획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주 체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대 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방 법	①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② 사업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③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④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사후조치	① 관리계획 수립 후 행안부 보고 ②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 ③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검 토	① 적정성 검토(관리계획 부실시 보완 요구) ② 이행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 실사 수행)

- (검토 및 조치사항)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확정된 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대상) 이전년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

- (주체) 지자체 작성, 행안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사후조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관리계획을 이력관리 DB에서 관리하고, 이행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사를 수행

나. 기타 관리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
 - 사업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
- 취소 및 중지사업
 - 차년도 이력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활용
- 재심사 사업
 - 중점관리사업 선정 통보 시 재심사 대상 사업도 지자체에 통보

3

이력관리 전문기관

□ 전문기관 개요

- 이력관리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수행

□ 업무범위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추진

① 사후평가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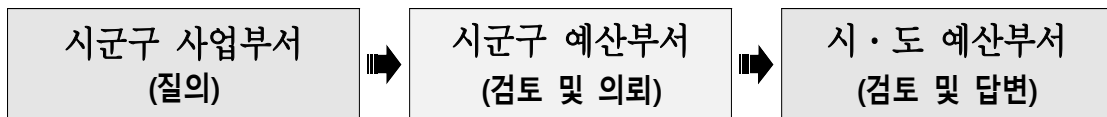
- 준비단계(당해년도 심사사업) 사업정보 DB 구축
- 당해연도 심사 결과 종합 분석
- 미통과(미심사 및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조사

② 이력관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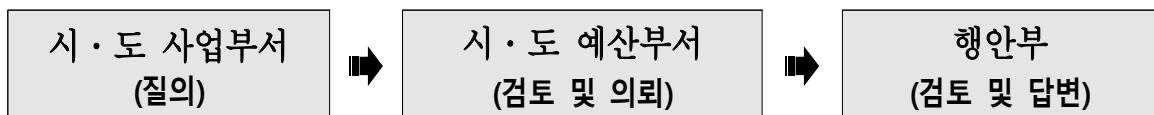
- 추진단계 사업정보 DB 구축
- 자가진단 결과 검토
- 추진단계 사업 분석(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중단 사유 검토, 재심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 검토)
- 기타 관리사업 검토(대규모 투자사업, 취소 및 중지사업, 재심사 사업)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관련 질의절차

- (시도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 의뢰



- (행안부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와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안부 의뢰
 - 시·도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안부 의뢰



□ 투자심사 의뢰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사전 검토

- 투자심사 의뢰전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투자심사의뢰서 내용에 대한 사전 충실한 검토
 -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
 -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오류 최소화 필요

참고1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조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의원상해부담금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지방의회 운영 지원 공정한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징수·조정교부금 재정·세정업무 등 	수입 관리, 재정 운영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융자 및 출자 기금회계 예치금 	부채 상환 해외채 채무관리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자산및물품취득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지방행정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청사운영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환(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 자체위탁교육, 해외교육, 능력개발비) ▪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025 재난방재·민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 민방위관리 ▪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제외)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민방위 운영
	026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052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제외)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 교육복지 확충 고등교육 재정 지원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신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평생교육,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 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 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 리·감독 및 규제 ▪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 예술·국악단등 육성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062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 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관광지, 유원지 ▪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 기타관광진흥 ▪ 관광홍보 등 <p>제외)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 축제(061 문화예술)</p>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산업 진흥
	063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 체육단체 지원 ▪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 각종대회지원 ▪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 체육산업 융자 ▪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체육산업 육성
	064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집행활동 ▪ 문화재행정 ▪ 문화재(무형포함)관리 ▪ 문화재개발 ▪ 천연기념물 ▪ 유적관리 등 	유형문화재 보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065 문화 및 관광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		
	071 상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예시)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상수도 개량 ▪ 배수지·취수장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상수도·식수 관리 하수도 관리 지하수 관리
	072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청소관리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 분뇨처리 ▪ 종합재활용사업 등 	폐기물 감량 폐기물 회수 폐기물 자원화 청소관리
	073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 공해배출업소지도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 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대기오염 관리 생활공해 관리
	074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생태계 보호 자연환경 보호
	075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연안환경정비사업 ▪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연안환경정비 해양오염 관리
	076 환경보호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제외)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예시)
	082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복지회관운영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취약계층 아동 보호 장애인 복지 증진 부랑인 보호 및 지원
	084 보육·가족 및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보육·가족 지원 여성 복지 증진
	085 노인·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노인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086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유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유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용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고용 촉진 및 안정 근로자 복지 증진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예시)
	087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호국영웅 선양사업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승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088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용자지원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주거 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
	089 사회복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방역·구호 건강 증진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보건환경연구원운영
	093 식품의약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마약등 	식품·위생 관리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유기동물 보호 	농가 소득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촌 인력육성 농업 기술개발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102 임업·산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조림, 사방, 육림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 재해방지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어촌	<p>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 기타 수산지원 등 <p>제외)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p>	<p>어촌 소득 안정 해양 환경 보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 재해방지 수산 인력 육성</p>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p>제외)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p>	<p>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p>
	112 산업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p>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p>
	113 무역 및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 외자유치사업 ▪ 종합무역센터건립 ▪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p>수출 기반 확대 외국 투자유치</p>
	114 산업진흥·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 전자상거래 지원 	<p>첨단산업 육성 산업진흥 산업구조 고도화</p>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p>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p>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예시)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특별·광역 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자전거도로 정비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 건설(142 지역및도시)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시설 관리
	123 도시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시설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 운영·관리
	124 해운·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해운·항만시설 확충 해운 물류시설 관리
	125 항공·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항공수송체계관리 공항이주단지조성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주차질서 확립 대중교통 안전 확보 대중교통 육성 지원 교통행정 개선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p>제외)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p>	<p>하천 정비</p> <p>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p>
	142 지역및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도서·벽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p>제외)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응답지원, 주택개량(088 주택)</p>	<p>주택 건설 및 운영</p> <p>도시개발</p> <p>택지개발</p> <p>지속가능한 도시성장</p> <p>취약지 개발</p>
	143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p>제외)산업단지조성의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p> <p>제외)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p>	<p>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p> <p>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p> <p>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p>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원자력 관련 업무 <p>제외)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p>	<p>과학기술 고도화</p>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p>과학문화 육성·지원</p>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제외)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2. 재원조달 능력 판단조서(별지서식 제2호)
3.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3호)
4.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4호)
5. 타당성 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5호)

【별지서식 제1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원: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계)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계)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계)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계)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구 분	Y-3	Y-2	Y-1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신명조14)				
증가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km²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구분 \ 연도		Y-1	Y	Y+1	Y+2	비고
현 재 액		(신명조13)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연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주민1인당 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연도(Y)	Y+1	증(△)감율(%)
계		(신명조11)		
소 계		(신명조11)		
일반 공공 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신명조11)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소 계				
공공 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소 계				
교 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소 계				
문 화 및 관 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소 계				
환 경 보 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 회 복 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 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 송 및 교 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 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시·도(시·군·구)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구 분		Y-1	Y	Y+1	Y+2	Y+3	비고	
세 입	세 입 합 계 (I)							
	자체재원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기 타						
	이전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채						
세 출 합 계 (II)								
세 출	경상경비 (A)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재무활동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						
	기추진사업 (B)	보전지출						
		보조사업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신규사업 (C)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사업 (C)	사업재원						
		법정경비						
신규사업 (C)	보조사업 (보조금, 규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가용재원 = (I) - ((A) + (B) + ①)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작성요령>

- 1]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 2] 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 3] 세출의 이전재원 사업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 4] 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 5] 신규가용재원은 세입(I)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신명조16, 진하계)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Y)		Y+1 계획		Y+2 이후			
				자 채	이 전	자 채	이 전	자 채	이 전	자 채	이 전	자 채	이 전		
계	건														
1	(신명조9)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 1] 투자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재
- 2] 우선순위 책정사유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 3] 이전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를 포함하여 작성
- 4] 사업비 연도 표시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회계, []1)		분 류	분 야2)	부 문					
담당자	○○도 ○○군 /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관련기관	000부처, 00000과/ 과장 000, 업무담당 5급 000(044-999-1234)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3)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천명	억 원 * 당초예산	억 원	억 원(%)	억 원	명	구분	합계	사업 추진	향후 운영
	사업 확정 절차		중기 반영 여부		사업 완료 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 확정 (00. . .)	사업 계획 수립 (00.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국비, 국비 부처균특, 국비 시도균특, 기금 등			
	사업 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타당성조사중(), 타당성조사완료(), 기본설계중(),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실시설계완료()									

1. 사업개요(신명조16, 진하게)

가.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시행근거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4) : (신명조14)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년 개월)

바. 사업량5) ※구체적으로 기재

- (신명조14)

1)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2)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3)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4)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사. 총사업비 :

억원

※ 정수표기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Y (확보액)	Y+1 (확보액)	Y+2 (확보액)	Y+3이후 (확보액)
계	(신명조13)	100(70)	200(100)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지역개발기금		()	()			
민간자본		()	()			
기 타		()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중 ()는 실 집행액을 기재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균특, 시도균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신명조14)
-
-
-

자. 기대 효과

- (신명조14)
-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도로 포장율 : % → ('00년) %	○하천 개수율 : % → ('00년)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주택 보급율 : % → ('00년)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경지 정리율 : % → ('00년) %

2. 사업비 산출내역(신명조16 ,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공사비	소계		
	(신명조13)		
보상비	소계		
용역비	소계		
...	소계		
기타	소계		

-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년 공시지가, '0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00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 ☆3)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 4)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교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신명조16, 진하계)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신명조13, 장평90)				

※ 사업추진상 구분은 사업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신명조16, 진하게)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신명조14, 진하게)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회제출 연월일)☆
- ※ 미 반영사업은 반영후 투자심사 의뢰(미 반영사업은 반려 또는 재검토 등 조치예정)
- 반영내역(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기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신명조11, 장평90)	.	계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신명조14, 진하게)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신명조13)			

다.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신명조14, 진하게)

○ 조사기관 :

※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

○ 용역결과(핵심내용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5. 투자심의자료(신명조16, 진하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신명조14, 진하게)

○ (수혜도) 전체 주민의 %(신명조14)

○

○

※ 수혜도 = 혜택 주민수 / 전체 주민수 * 100%로 계량화

라. 사업의 파급효과(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제시.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바. 자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신명조14, 진하게)

○(신명조14)

○

○

※ 자원별(이전자원(국비, 시도비), 지방채, 민자, 자체자원 등)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시도비, 민간자본, 기타 자원의 경우 자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사. 일자리 창출 효과(신명조14, 진하게)

- 00명(사업추진시 00명, 향후운영시 00명)(신명조 14)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input type="checkbox"/>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input type="checkbox"/>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¹⁾

1) <표1>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을 활용하되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평균값 활용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¹⁾(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²⁾)

1)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4>

2)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3>

※ <표1~4> 및 산출 내역 예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 7) 및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작성

□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운영비 절감 및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자체 시설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30년간 산정)

■ 직접고용효과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간)

* 연간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을 통한 간접 고용 인원 수** (30년간)

** 위탁·관리운영 등을 통한 연간 간접 고용 인원 수*30년

※ 상기 방식으로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산정 곤란 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

<붙임1>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예시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신명조14)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small>(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small>	예산액	413(토지보상비 등 43억 제외)
	총고용(명)	1,361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33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p>□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p> <p>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p> <p>-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p> <p>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p> <p>-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표2~4></p> <p>※ <표1~4>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및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을 활용하여 작성</p>	
고용효과 산출내역 <small>(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small>	<p>□ 고용효과: ① + ② = 1,360.5명</p> <p>① 직접고용효과(인건비 지출항목)</p> <p style="margin-left: 20px;">a. 21.5억원¹⁾ ÷ 0.2418억원²⁾ = 88.9명</p> <p style="margin-left: 40px;">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320-09) 등 인건비목 예산의 총 합계</p> <p style="margin-left: 40px;">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사회복지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2418억원 적용</p> <p>② 간접고용효과(인건비 외 지출항목)</p> <p>- 공사비 339.7억원은 <표2>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margin-left: 20px;">b. 339.7억원 ÷ 0.28억원 = 1,213.2명</p> <p>- 부대비 26.1억원은 <표2>에 의거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margin-left: 20px;">c. 26.1억원 ÷ 0.91억원 = 28.7명</p> <p>- 일반관리비 19.9억원은 <표2>의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margin-left: 20px;">d. 19.9억원 ÷ 0.91억원 = 21.9명</p> <p>- 주민편의시설 1.1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margin-left: 20px;">e. 1.1억원 ÷ 0.28억원 = 3.9명</p> <p>- 임대시설 4.3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부동산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p> <p style="margin-left: 20px;">f. 4.3억원 ÷ 1.11억원 = 3.9명</p> <p>※ 토지 보상비 등(42.7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p> <p>*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표1~4> 등 근거</p>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아.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 관계부처와 협의를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자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00. 0.00, 00일보, “00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등 외 0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0건으로 기재)

② '00. 0.00~0.00, 00면 주민 000명, “00사업 부지
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00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00. 0.00 현재 주민반발은 00된 상황)

차. 기 타(신명조14, 진하게)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 투자심사 경과(신명조14, 진하게 ※ 아래 예시)

- '00년 0월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신명조14)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신명조 14)
- .
- .

○ 재심사(재상정)사유(신명조14, 진하게)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신명조14)
-
-

○ 변경 내역(신명조14, 진하게)

- 사업비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 타
당 초	(신명조 12)					
변 경						
증·감						

- 사업규모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신명조 12)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용역비					
기 타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신명조 16 , 진하게)

기구 및 조직(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14) 조직도, 구성원 등 표기
-
-

사업수지 전망(신명조 14, 진하게) ☆

- <수입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 <지출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수지 전망(신명조 13)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신명조 12)			
	입 장 료				
	사 용 료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손 익(C=A-B)					

□ 세부시설운영계획(신명조 14, 진하게)

<시설별 운영 총괄> ☆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운영주체
지상5층	·000시설 1,000m ² , 000시설 500m ²		00시군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

-

○

-

※ 콘텐츠 확보 방안(신명조15, 진하계)

○ 콘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p>*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p> <p>ex) 000 관련 유물 : 000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p>*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p>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 ②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콘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콘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ex)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도로사업¹⁾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 ²⁾	<p>·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년</th> <th>○○년</th> <th>○○년</th> </tr> </thead> <tbody> <tr> <td>교통량</td> <td>대</td> <td>대</td> <td>대</td> </tr> </tbody> </table>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p>·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p> <p>· 고 시 일 :</p> <p>· 도로번호 :</p>								
도로정비중장기계획 반영여부	<p>· 반영년도 :</p> <p>· 사 업 비 :</p>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 ³⁾	<p>· 국도(국토관리청)</p> <p>· 기타</p>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 1) 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 2)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 3)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②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건축연도) 1)	총사 업비 (억원)	규모 2)	위치 3)	운영 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명)			필요시설 및 면적(m ²) ⁵⁾	수익성 6)
						무료	유료	과부족		
관내	계									
인근	계									

<작성요령> ※ 자치단체 관내 시설은 전체 작성

1) 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층, m²) 등을 기재.

3) 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 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 관내 및 인근 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운영분석을 통해 이용 수요 과부족에 따른 필요시설 및 면적 기재

6) 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여부

용역 기관	용역기간	용역결과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m², 억원)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최초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m²)

구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재					
신축					

2) 의회

(기준 : 천명, m²)

구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재					
신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m²)

구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재					
신축					

※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예시)

□ 000 청사 신축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00시도 00시군구)

구분		내용	비고	
사업규모		○ 위 치 : ○ 사업비 : 00억원(시도비 0, 시군구비 0) ○ 기 간 : '00.0.~ '00.0.		
검토 사항	· 청사 현황	현재	○ 준공년도 : '00. 0.0.(내구연한 00년, 00년 경과) ○ 부지면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연 면 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m ²)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신축 계획	○ 부지면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연 면 적 : m ² (000부 최소기준 000m ²)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m ²)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증감현황) - 부지 00m ² 증 - 연면적 00m ² 증
	· 물리적 여건	○ 안전등급 : 00등급(정밀안전진단 결과, '00. 0.0.) ○		
	· 환경여건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필요시 별지 작성) ○		
	· 경제적여건 (신축vs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등)	○ 신축시 : 000억원 ○ 리모델링시 : 000억원	객관적산출 근거 표기	
	· 기타 (기존시설활용방안 등)	○ ○		
종합의견		○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성 등 ○		

○ 작성자 : (리모델링 전문 분석기관) 000건축사 등 000 (서명)

○ 확인자 : 00시도 00시군구 00실국장 000 (서명)

③ 관광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여부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일 : · 승인일 : 	지정규모 : 승인규모 :																		
관광수요 예측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3년간 관광객증감추이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년</td> <td>○○년</td> <td>○○년</td> <td>증가율</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간 증가예상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년</td> <td>○○년</td> <td>○○년</td> <td>○○년</td> <td>○○년</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r> </table>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최근 5년간 인구증 가율 고려 등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인근지역 관광지 등 개발현황 (계획포함) ³⁾	①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연간이용자 수) * 기 개발완료된 경우 기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일 : · 승인일 : 																		
과부족 및 필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요 : 명, m² · 공급현황 : 명, m² · 과 부 족 : 명, m² · 추가개발 : 	수요 및 공급현황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기재 ex) 지역내 관광수요 및 공급현황으로 산출																		

<작성요령>

- 1) 「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지정 등
- 2) 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추이 및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예상추이를 기재하고, 비교란에는 관광객예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3) 해당 자치단체 또는 인근지역에 기 개발중인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개발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자대상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관광지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④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인근 공단 등 분양실적 및 전망 ¹	①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m ² 당 천원																									
	②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m ² 당 천원																									
	<분양수요 및 전망> - 기 조 성 : m ² , 공급현황 : m ² (분양률 %) - 조 성 중 : m ² , 예정수요 : m ² (예상 분양률 %) - 총 분양수요 : m ² , 총 예정수요 : m ² (과부족 : m ²) - 신규조성 : 000사업, m ² - 분양율(예상)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m ² 당 천원																									
조성원가의 적정성 ²	(단위 : m ² , 백만원) <table border="1" data-bbox="379 1290 1235 1529"> <thead> <tr> <th>사업명</th> <th>심사의뢰사업</th> <th>①</th> <th>②</th> </tr> </thead> <tbody> <tr> <td>규모</td> <td></td> <td></td> <td></td> </tr> <tr> <td>총사업비</td> <td></td> <td></td> <td></td> </tr> <tr> <td>보상비</td> <td></td> <td></td> <td></td> </tr> <tr> <td>공사비</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조성단가 : m ² 당 천원, 분양단가 : m ² 당 천원	사업명	심사의뢰사업	①	②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사업명	심사의뢰사업	①	②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내용 ³	· 조사기간 : ‘○○.○○~‘○○.○○ · 조사대상 : 총 명(업체) · 조사방법 : · 조사결과 : 총 명(업체) 입주 희망 - 분양희망 면적 ○○○천m ² (분양면적의 ○○%)																									
기타 참조사항	○ ○																									

<작성요령>

- 1」 자치단체 관내 인근지역 공단·단지 분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인근지역 조성원가와의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타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할 것
 - 3」 조사대상은 명단을 첨부. 조사방법에는 전화, 설문 등 조사방법을 기재
- ※ 공사 예정지와 인근 공단, 단지 등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⑤ 행사성 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행사일시: '00. 00. 00. ~ 00. 00.(일간) · 행사위치: 00시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년</td> <td>○○년</td> <td>○○년</td> <td>증가율</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able>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년</td> <td>○○년</td> <td>○○년</td> <td>증가율</td> </tr> <tr>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able>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손익계산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2">구 분</td> <td>금액(백만원)</td> </tr> <tr> <td rowspan="3">수 입 (A)</td> <td>계</td> <td></td> </tr> <tr> <td>입 장 료</td> <td></td> </tr> <tr> <td>사 용 료</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td> </tr> <tr> <td rowspan="4">지 출 (B)</td> <td>계</td> <td></td> </tr> <tr> <td>인 건 비</td> <td></td> </tr> <tr> <td>시설운영비</td> <td></td> </tr> <tr> <td>감가상각비</td> <td></td> </tr> <tr> <td colspan="2">:</td> <td></td> </tr> <tr> <td colspan="2">손 익(C=A-B)</td> <td></td> </tr> </table>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손 익(C=A-B)			근거: '00 0000축제정산보고서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손 익(C=A-B)																														
종합의견		근거: '00 0000축제 사후평가보고서																												

【붙임1 타당성 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4.5%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종합의견 :

※ 걱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분석 조건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24							
25							
26							
27							
28							
29							
3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 분석결과

구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치			

[붙임2] 타당성 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 조사 지적 내용 ¹⁾	반영 내용 ²⁾
○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 1)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 2) 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3]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 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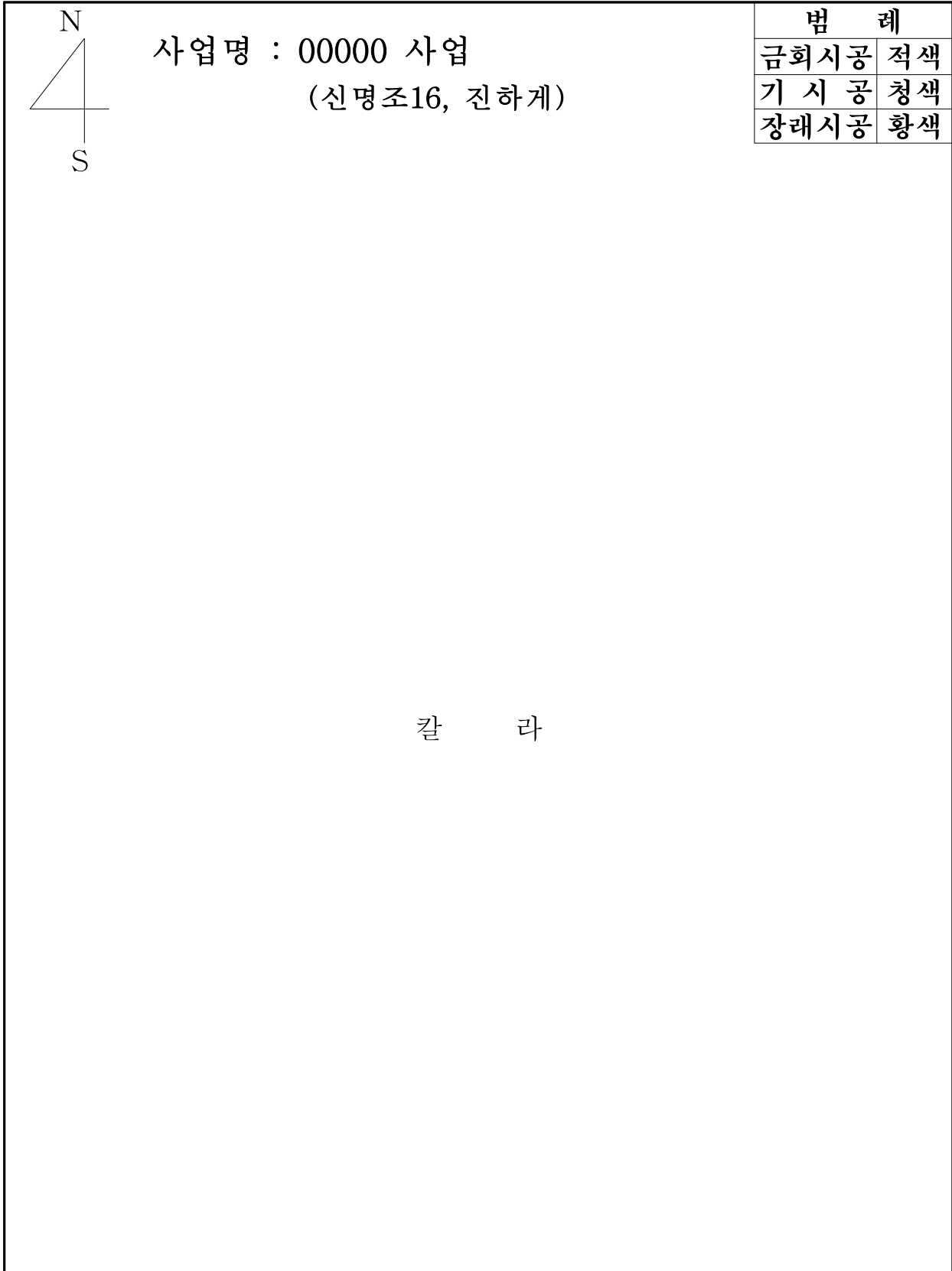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위 치 도

(신명조24, 진하계)



현 장 사 진

(신명조24 , 진하게)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게)

칼 라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 할 것

【별지서식 제2호】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신명조24, 진하계)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계)

(○○시·도 본청)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계							(신명조 12)	
이 전 재 원	국 비							부처
	시도비							시도 <small>* 균등 시도자율계정인 경우</small>
자체재원								
지방채								
민간자본								
기 타								
종합실무 의 견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00도 본청)

실 무 심 사 조 서(신명조24, 진하계)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계)

(○○시·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신명조 13)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00시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00연도)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비 지원 가 능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 지방비확보 가 능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 지방채의 적 정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 경제적타당성(B/C, NPC, IRR), 재무적타당성(수익성) 등 계량화하여 기술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경기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 필요성및 시 급 성	○
	· 파급효과	○ ※ 교통난해소, 물류비용절감, 서비스등급 개선, 지역지표 개선 등 계량화
6.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	· 주민숙원 및 수혜도	○ (신명조 13) ※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수혜 지역 및 지역인구 / 간접 수혜 지역 및 인구 등을 기재
	· 사업요구도	○ ※ 사업과 관련된 민원, 여론조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일시, 민원자, 내용 / 조사기관, 기간, 결과)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유사사업 현황 - 사업규모(평균) m ² , 사업비(평균) 억원 - 공급현황 : 총 수요자 명(과부족 명) ○ 필요시설 : 000시설, m ²
		○ 사업규모 : 부지 m ² , 연면적 m ² (지하0층/지상0층) - 지하0층 : 기계실, 000, 000 등(00m ²) - 지상0층 : 안내실, 000, 000 등(00m ²) - 지상0층 : 0000실, 000, 000 등(00m ²) ○ 사 업 비 : 억원(국비 0, 도비 0, 시비 0)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관내 및 인근 유사사업 평균 사업규모 및 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등)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 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 ※ 재심사(재상정) 사업에 한하여 투자심사결과 및 재심사 (재상정) 사유 등을 기재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1.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별지서식 제4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계)

1.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⑤ 반려 : 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다. 분야별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일반공공행정	소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소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환 경 보 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 회 복 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 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과 학 기 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 비 비	예비비												
기 타	기 타												

라. 투자비 규모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0억원 미만												
20억원-40억원 미만												
40억원-100억원 미만												
100억원-200억원 미만												
200억원-300억원 미만												
30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①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조건부		재 검 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해도 저조										
기 타										

-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능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 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해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2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시 · 도		시 · 군 · 구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해도 저조						
기 타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단체명	계	공무원	교수	인사 공회계사	전문 연구원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기타
합계	()	()	()	()	()	()	()	()
시·도본청								
시·군·구계								
시계								
○○시								
⋮								
군계								
△△군								
⋮								
구계								
××구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 ○○명

② 여성위원은()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 목	
관련규정	
운 영 현 황	
문 제 점	
발 전 방 안	

【별지서식 제5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원: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당성 조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계)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계)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 ①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자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자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 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 사업개요

가. 담당부서 등

- 사업추진부서
- 담당자(연락처)
- 관련민간업체 개요(민간협력사업인 경우) : 연혁,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

나.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라.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 및 관계 명시
- 사업추진절차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이전 투자심사 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바. 사업위치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첨부

사.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아. 사업량 및 규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 사업량 및 수요 추정 근거 제시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용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구 분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	준공
계(백만원)			()					
국 비			()					
시 도 비			()					
시군구비			()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차. 기대효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산출내역

가. 재원조달방안 및 채무부담행위

- 사업개요의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를 명시
(ex.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 국비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민자사업의 경우 우발채무(매입확약, 담보제공 등의 신용보강) 혹은 예산외 부담행위 여부도 함께 제시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들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 SPC/PF 설립시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나.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예비비 및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가격이 100원임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산출내역 및 단가	금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공사비 ①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①-1						
①-2						
①-3						
보상비 ②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②-1						
②-2						
용역비 ③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③-1						
③-2						
③-3						
기타 : 시설부대비 ④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④-1						
④-2						
기타 : 운영설비비 ⑤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⑤-1						
⑤-2						
예비비 ⑥	(공사비+시설부대경비+용지보상비) × 10%					단, 해당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제외

*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의 총사업비와 일치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를 포함함.

※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 감정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시기

다.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항 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 고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인건비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①-1			
①-2			
①-3			
운영관리비 ②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1			
②-2			
유지보수비 ③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③-1			
③-2			
③-3			
기타 ④			물품구입비, 채투자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 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④-1			
④-2			

라. 상부시설물 운영계획(용지개발 사업의 경우)

- 상부시설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기재
-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
-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내역 등

상부 건축물명	규모(연면적 /대지,m ²)	시설개요	연간 운영비용(천원)	연간 매출액(천원)	비고 (산출근거)
예) 호텔	124,677/ 19,452	-등급 및 객실수	123,000	123,000	

※ 숙박시설의 경우는 등급표시, 산업시설의 경우 업종표시

※ 상부시설 세부 공사 계획은 별도 첨부하여 제출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

- 연차별 투자금액

구분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 ·	준공
비용 합계 ①+②(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①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운영비 (백만원)	소계 ②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 타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2부 및 전자파일) 및 기타 필수자료

- ※ 사업계획서는 사업유형별 첨부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 기타필수자료의 예: ①청사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및 리모델링 대안, ②전시시설 사업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③환경시설 대보수 사업의 경우 기술진단 보고서 등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 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단계	사업구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 업무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인원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규모(면적) 기준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운영계획(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현장 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설계지침서		공사관련 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시설, 마감재 비교		
	공사비 비교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 계획	사업수행계획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개발여건 분석	대상지 환경(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개발계획 기본구상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구역경계 설정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교통처리계획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단지조성계획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방재계획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하천계획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환경보전계획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상부건축물 계획	공장(개략 공사비/운영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사업성 분석	총사업비, 분양수입, 자원조달계획 등		
분양계획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 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교부세법 및 교부세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6.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 고시
7. 201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
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

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1의2.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 1의3.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4.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1의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6.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7.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8.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시·도: 40억

2. 시·군 및 자치구: 25억

-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일부개정 2020.9.11.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4., 2014. 11. 28.>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9., 2014. 11. 28., 2017. 12. 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08. 8. 14., 2009. 2. 9., 2010. 12. 31., 2011. 9. 29., 2013. 3. 23., 2013. 6. 5.,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24., 2016. 6. 30., 2017. 7. 26., 2017. 12. 29.>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나. 삭제 <2014. 11. 28.>
-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 가. 시·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삭제 <2014. 11. 28.>
-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1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사업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4.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7.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
8.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9.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10.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1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 8. 14., 2017. 12. 29.>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4., 2010. 12. 31., 2014. 11. 28., 2016. 3. 30., 2017. 12. 29., 2020. 9. 11.>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09. 2. 9.,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24., 2017. 7. 26., 2017. 12. 29., 2020. 9. 11.>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

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규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2017. 7. 26.>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자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

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자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자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times \frac{20}{100} + 150\text{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1. 28.]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3. 14.,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 3. 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2017. 7. 26.>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2017. 7. 26., 2017. 12. 29.>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중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1. 28.>]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9.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9., 2020. 9. 11.>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2. 24.]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24.]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12. 29., 2020. 9. 11.>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times \frac{20}{100} + 150억원$$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10조에서 이동 <2014. 11. 28.>]

부칙 <제200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투자심사 제외 사업(제3조제2항 관련)

1.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 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받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 사업
9.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 - 21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타당성 조사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6.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56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 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7. 202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기준

< 유의사항 >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법 제33조제11항)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 투자 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함
 -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5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
 -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 *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 예1)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승인받은 경우 25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투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었던 경우 동 심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범위 내에서는 재심사없이 지방채 증액 가능
 - 예2) 국비 50억원, 지방비 30억원, 지방채 2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6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
 - ※ 예1), 예2)의 경우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이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

다. 채무부담행위 관련

- 채무부담행위의 대상사업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성격상 SOC 건설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채무부담행위는 한도액 범위 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 제출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함
 - ※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예산은 늦어도 채무부담행위를 한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법 제44조제3항)
 - ※ 자치단체의 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라. 도시철도공채 관련

- 도시철도법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봄

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행 관련

- 한도액이 부여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구성원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조합과 그 구성원인 자치단체는 상환과 이자지급에 연대책임을 짐
- 지방채 발행 가능사업은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사업과 동일함

바. 지방채의 발행 관련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승인, 의결)를 거쳐야 함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한도액 미사용액 및 공자기금 등 공공자금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원가 공개 철저

- 청사원가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이 가능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차입을 신청한 경우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 (2단계) 계약체결 단계 (3단계) 설계변경 단계 (4단계) 준공단계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청사정비기금 신규 차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간 청사정비기금 배정을 제한하고, 기 배정 후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사정비기금 차입을 중단할 수 있음

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시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회,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7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
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개요

- 기간 :
- 위치 :
- 규모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향후계획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4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시행계획

2014. 1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I. 추진개요

□ 배 경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법령·예산안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지속 제기
-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의 낭비성 지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14.5.28 공포, '14.11.29 시행

□ 내 용

- (자치단체)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및 공모사업 응모 전에 해당 자치단체 장이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 그 결과에 대해 민간인 참여가 보장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 참고 : 재정투자사업 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와의 관계 >

-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은 현행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포함
-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유치·응모 신청 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차원
 - 이에 비해, 재정투자심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 및 상급기관에 의한 타당성 심사

- (중앙관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중앙관서가 자체적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 후,
 - 행자부장관 및 기재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II. 평가대상

□ 자치단체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및 공모사업 등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국제행사(국비지원 10억원 이상)의 경우, 개념정의 및 평가 대상 등은 기재부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준용

- 중앙의뢰 재정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재정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간주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3호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중앙관서 : 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고려

□ 평가 제외

○ 신규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Ⅲ. 평가범위 및 항목

□ 평가범위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범위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자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 사업, 법령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는 재정투자심사시 판단

* 경제적 타당성(B/C, NPC, IRR) 및 수익성 평가 등

□ 평가항목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및 공모사업 등 >

-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사업기간별 총 사업비 및 지방비 규모와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평가
 - (사후 소요재원)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원의 성격, 규모 및 조달 계획 등을 평가
 - (재정영향평가)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대비 사업 규모 분석
 -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가
 - '자체사업 예산대비 지방비'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조달 여력 평가
-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른 정책사업, 자체사업 분류 참고

< 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

- (소요재원) 사업기간별 재원(국비, 지방비) 규모 및 지방비 용도 등
- (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 부담 규모 및 시도별 내역 검토

IV. 평가절차

1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및 공모사업 등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자치단체장)

- 사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실시
 - ※ (절차) 개최계획서 작성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자치단체장) → 국제행사 개최 승인(기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자치단체장) → 지방재정투자심사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또는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가능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시기)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필요시 수시심사 추가 실시)
 - ※ 1차 평가는 2월 28일, 2차 평가는 5월 31일, 3차 평가는 8월 15일, 4차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
- (방법) 서면심사도 가능(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
 - ※ 사업계획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②-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제출
 - ※ 사업계획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③ 유치신청, 응모 등 사업 추진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 등 가능

2

법령 제·개정안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입안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② 평가결과 제출

-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시, 행자부장관 및 기재부장관에게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부합하는 등 필요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부의 요청 가능

3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

② 평가결과 제출

-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행자부장관과 협의시 행자부장관과 기재부장관에게 서류 또는 명세서와 평가서 제출
 - ※ 제출서류 :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서류·명세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부합하는 등 필요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부의 요청 가능

V. 향후 계획

□ 시행상황 점검

-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현황,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실태 등 시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문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예시1) 중앙관서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모사업에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예시2) 중앙관서가 매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영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주) 광역자치단체가 공모하는 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③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3조(평가 면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을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주2) 격년 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등)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주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주2) 국·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주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를 포함

②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주) 사업의 시행기간이 3년, 8년 등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기간 동안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봄

③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신규사업의 정의 등)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주)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

(예시)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국비 지원을 결정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주1) 지방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③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주1) 국가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제6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영 제35조의5제1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 순계기준 당

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② 영 제35조의6 제2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수 : 평가대상 관련 시·도 및 시·군·구의 수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지방재정 부담 총액 및 시·도별 재정부담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변화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평가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자원 규모 및 자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주) [별지 제5호 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심

사위원회 심사 결과서 서식 변경 가능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예시)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제8조(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 제27조의2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 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5호, 2016.6.30>

이 지침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추진근거	

재원 소요	① 사업기간별 재원	구분	Y	Y+1	Y+2	Y+3	Y+4	
		계						
		국비						
		사도비						
		사군구비						
		지방채						
		민자 등						
	② 사후 소요 예상액	구분	Y	Y+1	Y+2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유지비용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연 도 별 재 정 영 향 평 가	구분		Y	Y+1	Y+2	Y+3	Y+4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비율(A/B)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비율(A/B)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체사업 예산(B)						
	비율(A/B)						

평가 결과	⑥ 내용					
	⑦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방법

□ 자원소요란

- ① 사업기간별 자원: 사업기간의 유형별 자원을 작성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 소요자원의 예상액을 작성
- ② 사후 소요예산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후 소요자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억원 단위)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자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자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자원의 예상액을 작성

□ 연도별재정영향평가란

-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시행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총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평가결과란

- ⑥ 내용: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합니다.
 - 예) 00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하나, 사후 소요금액 규모가 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자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⑦ 부서명: 해당 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담당부서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결과서(협의요청서)

요청 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근거	

면 제 결 과	① 면제 대상 여부	
	② 면제 사유	

작성방법

□ 면제결과란

- ① 면제 대상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제1호
- ② 면제 사유: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이 지침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2016. 1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에 대한 중앙 및 시도·시군구 투자심사 기준을 구체화·명확화 하여 과대·호화청사 신축을 예방하고자 함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중앙 및 시도·시군구의 투자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과대·호화청사 신축을 예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투자심사 구분

- 중앙 심사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
 -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시·군·구의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시도 심사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
 -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 시·군·구 심사
 -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미만,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자체심사가 원칙이나, 청사 신축은 반드시 상급기관(시도 또는 중앙)에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기준

- 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연계)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및 정부역점시책과 연계성 검토
 - (효과) 구도심 활성화 등 청사 신축에 따른 기대효과 검토
 - (규모) 책임 읍·면·동제 확대 등에 따른 본청 기능 축소를 고려하여 향후 잉여 공간 발생에 대하여 신중 검토
 - (안전)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D등급 이하) 보강·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안전등급 상향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재정) 예산절감을 위하여 리모델링 우선 검토 및 지방재정규모를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부담 경감 노력도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확인
 - 타당성 조사 시행여부 검토(해당될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기본계획 상에 설계/시공 분리발주 검토 여부 확인
 - 청사 신축비용 주민공개 여부(기본계획 수립단계)
- 청사 기준면적 및 신축비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기준면적 준수
 -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신축비용의 적정성 검토
- 재원조달 및 주민여론 등에 관한 검토
- 공공시설 운영계획 수립여부(운영비 충당방안 등) 검토

□ 승인조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청사 신축비용 단계별 주민공개 이행
 - * 기본계획 → 계약 → 설계변경 → 준공
- 기능 중심의 공간설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
 - * 로비 유휴 공간 최소화, 커튼월방식 설계 지양 등
- ※ 투자심사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이행시 상응하는 패널티 부과

붙임1 자체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① 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가)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및 정부 역점시책과의 연계성	가) 청사이전 관련 특별법 및 행정 체제개편 대상여부 등을 확인
나) 청사 신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나) 구도심활성화 등의 기대효과
다) 규모의 적정성	다) 향후 본청 축소여부 확인
라) 안전등급 상향 가능여부	라) 보강공사로 안전확보 및 공간 활용 가능여부
마) 리모델링 우선검토	마) 리모델링 미검토시 재검토
②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가) 미반영시 재검토가 원칙
나) 타당서 조사 시행(해당될 경우)	나) 미시행시 반려(타당성재심사)
다) 에너지이용효율화	다) 미반영시 재검토가 원칙
라) 설계/시공 분리발주 우선반영	라) 설계/시공 통합발주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재검토
마) 청사 신축비용 공개	마) 신축비용 미공개시 재검토
③ 청사 기준면적 및 신축비용	
가) 청사 기준면적 준수여부	가) 미준수시 재검토가 원칙
나) 신축비용의 적정성	나) 과다설계인 경우 반려(재설계)
④ 재원조달 및 주민여론 등에 관한 검토	
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가) 불분명한 경우 재검토
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나) 의견수렴 절차 준수여부
⑤ 공공시설 운영계획 검토	
가)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가) 운영계획 수립여부 및 시설운영비 총당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

붙임2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2,3)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1,829㎡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비고

-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	132㎡	99㎡	99㎡	99㎡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특별시		24,930m ²
광역 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m ²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m ²
	인구 200만명 미만	5,174m ²
특별자치시		4,889m ²
도	경기도	29,164m ²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m ²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m ²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m ²
특별자치도		8,467m ²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 분		기 준 면 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m ²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m ²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m ²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m ²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m ²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m ²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m ²	
	인구 100만명 이상	6,597m ²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m ²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m ²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m ²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830m ²	
	인구 15만명 이상	1,996m ²	
자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961m ²
		인구 50만명 이상	4,172m ²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358m ²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m ²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m ²
		인구 50만명 이상	4,172m ²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6

문화체육시설 관련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3. 삭제 <2019. 4. 16.>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13.]

[별표 1] <개정 2012.8.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삭제 <2019. 4. 16.>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전문개정 2014.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별표 1] <개정 2011.12.1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설 종류	설치 기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2. 시·군

시설 종류	설치 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인구 10~15만 명인 시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운동장	경기장 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 면적	20,640㎡	20,640㎡	20,640㎡	
	스탠드 면적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육관	경기장 규격	폭×길이×높이 24m×46m×12.4m	폭×길이×높이 24m×46m×12.8m	폭×길이×높이 24m×46m×13.5m	
	부지 면적	6,109㎡	7,124㎡	8,236㎡	
	건축 면적	1,864㎡	2,196㎡	2,472㎡	
	연면적	계	2,541㎡	3,011㎡	3,743㎡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 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 규격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수영조 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 ~ 25m	21 ~ 25m	21 ~ 25m
		레인 수	8 ~ 10레인	8 ~ 10레인	8 ~ 10레인
관중석 수	-	-	300석		
기타 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비 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고용효과산출 관련 자료

(20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표1〉 산업별 연평균 근로자 임금(2019)

산업종분류	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억원)	산업종분류	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억원)
A. 농업, 임업 및 어업	0.3488	H. 운수업	0.4226
B. 광업	0.4986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0.3386
석탄,원유및천연가스광업	0.6345	수상운송업	0.5205
금속광업	0.4673	항공운송업	0.7522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	0.4575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0.4926
광업지원서비스업	0.7078	I. 숙박및음식점업	0.2813
C. 제조업	0.4913	숙박업	0.3301
식료품제조업	0.3753	음식점및주점업	0.2749
음료제조업	0.5740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5459
담배제조업	0.7684	출판업	0.4969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0.3680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0.4130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0.3689	방송업	0.6907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0.3569	통신업	0.7178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0.382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0.5830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0.4194	정보서비스업	0.543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3421	K. 금융및보험업	0.7572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0.9104	금융업	0.781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0.5839	보험및연금업	0.6876
의약품물질및의약품제조업	0.519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0.768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0.4296	L. 부동산업및임대업	0.339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4896	부동산업	0.3364
1차금속제조업	0.5395	임대업;부동산제외	0.375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0.4118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597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0.7017	연구개발업	0.6936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0.4327	전문서비스업	0.6449
전기장비제조업	0.4646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0.4877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0.4521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384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0.5881	N.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29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5737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0.2931
가구제조업	0.3828	사업지원서비스업	0.2930
기타제품제조업	0.3393	P. 교육서비스업	0.4496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7920	교육서비스업	0.4496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0.799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3625
수도사업	0.7222	보건업	0.4419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4312	사회복지서비스업	0.2602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0.4438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3689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0.4268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3694
환경정화및복원업	0.5116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0.3688
F. 건설업	0.4438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0.3228
종합건설업	0.4973	협회및단체	0.3013
전문직별공사업	0.4079	수리업	0.3947
G. 도매및소매업	0.4219	기타개인서비스업	0.266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0.5423	전 체	0.4442
도매및상품중개업	0.4725		
소매업;자동차제외	0.3346		

주) 농업, 임업 및 어업은 201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연평균 임금총액으로 환산하였으며, 이외의 산업은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연평균 임금총액임

<표2> 예산비목별 고용유발계수

< 2017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목-세목	과목명	고용유발계수 (명/억원당)	목-세목	과목명	고용유발계수 (명/억원당)
100	인건비		03	연금지급금	인건비 고용효과
110	인건비	인건비 고용효과	04	보험금	1.00***
01	보수		05	이차보전금	0.86***
02	기타직 보수		06	구호및교정비	0.92***
03	상용임금	인건비 고용효과	07	민간자본보조	<표4> 해당산업
04	일용임금		0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표4> 해당산업
05	연가보상비		09	고용부담금	인건비 고용효과
200	물건비		330	자치단체이전	
210	운영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표4> 해당산업
01	일반수용비	0.99***	02	자치단체 교부금	
02	공공요금 및 제세	0.92***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3	파복비	0.63***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4	급식비	1.08***	340	해외이전	
05	특근매식비	1.08***	01	해외경상이전	분석제외
06	일·숙직비	1.01***	02	국제부담금	
07	임차료(부동산/기계장비 등) ¹⁾	0.49*** /0.58***	03	해외자본이전	
08	유류비	0.09***	350	출연금	
09	시설장비유지비	1.81***	01	기관운영출연금	<표4> 해당산업
10	학교운영비	1.32***	02	사업출연금	
11	재료비	<표4> 해당산업	03	금융성기금출연금	
12	복리후생비	인건비 고용효과	04	민간기금출연금	
13	시험연구비	1.01***	360	연구개발 출연금	분석 제외
14	일반운영비	<표4> 해당산업	01	연구개발인건비	인건비 고용효과
15	관리운영비	1.81***	02	연구개발경상경비	1.17***
16	기타운영비	1.81***	03	연구개발건축비	0.80**
220	여비		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표4> 해당산업
01	국내여비	1.05**	05	연구개발활동비등	0.95***
02	국외업무여비	분석 제외	400	자산취득 및 운용	
03	국외교육여비		410	건설보상비	분석 제외
230	특수활동비	분석 제외	420	건설비	
240	업무추진비		01	기본조사설계비	0.74***
01	사업추진비	1.43***	02	실시설계비	0.74***
02	관서업무추진비	1.43***	03	공사비	<표4> 해당산업
250	직무수행경비		04	감리비	0.74***
01	교수보직경비	1.43***	05	시설부대비	0.75***
02	직책수행경비	1.43***	430	유형자산	
03	특정업무경비	1.43***	01	자산취득비 ²⁾	<표4> 해당산업
260	연구운영비		02	저장품매입비	
01	일반연구비	0.95***	440	무형자산	분석제외
02	정책연구비	0.95***	450	융자금	
300	이전지출	분석 제외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표4> 해당산업
310	보전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1	손실보상금	분석 제외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2	배상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03	포상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04	기타보전금		460	출자금	
320	민간이전		01	일반출자금	<표4> 해당산업
01	민간경상보조	<표4> 해당산업	02	통화금융기관출자금	
02	민간위탁사업비	<표4> 해당산업			

1) 부동산서비스 0.49,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0.58 2) 자산취득비 중 부동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주) *(산업연관표 대분류), **(산업연관표 중분류), **(산업연관표 소분류)

<표3> 지출내역별 고용유발계수

< 2017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분류	지출내역별	산업별 배분	고용유발계수 (명/억원당)
경상비	난방, 수도비	전력,가스및증기(대분류)	0.20*
	건축비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80*
	숙박비, 식음료비	음식점 및 주점/숙박서비스	1.08*** / 1.01***
	교통비, 여비	육상운송서비스/항공운송서비스	1.05**/ 0.32***
	우편, 전화료	통신서비스	0.58**
	간식비	음식점 및 주점	1.08***
기자재 및 장비비	기계 및 장비	기계및장비(대분류)	0.59*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및전자기기(대분류)	0.60*
	정밀기기	정밀기기	0.51**
	운송장비	운송장비(대분류)	0.66*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99***
	장비임대료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0.58***
원료비	석탄 및 석유제품	석탄제품/석유제품	0.97*** / 0.09***
	화학제품	화학제품(대분류)	0.43*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대분류)	0.64*
	1차금속제품	1차금속제품(대분류)	0.36*
	금속제품	금속제품	0.58**
사업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1.99**
	출판, 교재구입비	출판서비스	1.17***
	임차료	부동산서비스/기계장비및용품임대	0.49*** / 0.58***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0.95***
	프로그램운용비, 네트워크구축, 사업운영비, 창업지원비, 업무활동운영비	법무 및 경영지원서비스	1.17***
	마케팅지원, 광고 및 홍보비, 컨설팅비, 사업전문서비스	법무 및 경영지원서비스/광고	1.17*** / 1.23***
	설계비, 감리비	건축토목관련서비스	0.74***
	교육비 및 인력양성	교육서비스	1.32***
	오락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0.80***
	자동차수리, 이미용세탁	수리서비스/개인서비스	0.97*** / 1.31***
	사무용품구입비(문방구류, 잉크, 토너)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0.99***
부동산구입, 인허가 비 등	-	분석효과 제외	
기타	훈련장려금-훈련장려수당	-	0.99***
	훈련비, 훈련수당	-	<표4> 해당산업
	바우처	-	<표4> 해당산업
	장학금	교육서비스	1.32***
	위 지출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표4> 해당산업

주) *(산업연관표 대분류), **(산업연관표 중분류), **(산업연관표 소분류)

〈표4〉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 2017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코드	산업별 분류	고용유발 계수 (명/억원당)	코드	산업별 분류	고용유발 계수 (명/억원당)
A	농림수산물	0.41	C12	운송장비	0.66
01	작물	0.34	40	자동차	0.69
011	곡물 및 식량작물	0.57	401	자동차	0.65
012	채소 및 과일	0.25	402	특장차 및 트레일러	0.71
019	기타작물	0.31	403	자동차 부품	0.83
02	축산물	0.53	41	선박	0.68
021	낙농 및 축우	0.44	410	선박	0.72
029	기타 축산	0.45	42	기타 운송장비	0.65
03	임산물	0.56	421	철도차량	0.65
030	임산물	0.56	422	항공기	0.61
04	수산물	0.47	429	기타 운송장비	0.79
040	수산물	0.48	C13	기타 제조업 제품	0.87
05	농림어업 서비스	1.23	43	기타 제조업 제품	0.89
050	농림어업 서비스	1.23	431	가구	0.82
B	광산업	0.79	439	기타 제조업 제품	0.99
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1.85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75
061	석탄	2.48	4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77
062	원유 및 천연가스	0.70	440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79
07	금속 및 비금속 광물	0.67	D	전력, 가스 및 증기	0.20
071	금속광물	1.36	45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0.24
072	비금속광물	0.67	450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0.24
C01	음식료품	0.61	46	가스, 증기 및 온수	0.11
08	식료품	0.72	461	도시가스	0.08
081	육류 및 낙농품	0.66	462	증기 및 온수 공급	0.21
082	수산가공품	0.89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80
083	정곡 및 제분	0.62	47	수도	0.60
084	제당 및 전분	0.31	470	수도	0.59
085	떡, 과자 및 면류	0.89	48	폐수처리	0.73
086	조미료 및 유지	0.70	480	폐수처리	0.73
087	기타 식료품	0.80	49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0.93
088	사료	0.49	491	폐기물처리	0.82
09	음료품	0.51	492	자원재활용서비스	1.07
091	주류	0.36	F	건설	0.82
092	비알콜음료 및 얼음	0.70	50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80
10	담배	0.16	501	주거용 건물	0.75
100	담배	0.16	502	비주거용 건물	0.84
C02	섬유 및 가죽제품	0.69	503	건축보수	1.11
11	섬유 및 의복	0.68	51	토목건설	0.89
111	섬유사	0.71	511	교통시설 건설	0.79
112	섬유직물	0.81	5111	도로시설	0.94
113	섬유표백 및 염색 임가공	1.25	5112	철도시설	0.46
114	직물제품	0.78	5113	항만시설	0.53
115	의복제품	0.63	512	일반토목시설 건설	0.72
12	가죽제품	0.81	5121	하천사방	0.55
120	가죽제품	0.81	5122	상하수도시설	0.59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0.74	5123	농림수산토목	0.47
13	목재 및 목제품	0.72	5124	도시토목	0.84

131	목재	0.59	513	산업시설 건설	1.07
132	목제품	0.84	5131	환경정화시설	1.23
14	펄프 및 종이제품	0.71	5132	통신시설	0.83
141	펄프	0.61	5133	전력시설	1.32
142	종이류	0.51	5134	산업플랜트	0.83
143	종이제품	0.81	519	기타 건설	1.31
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0.88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08
15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0.85	52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12
C04	석탄 및 석유제품	0.09	52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11
16	석탄 및 석유제품	0.10	H	운송서비스	0.85
161	석탄제품	0.97	53	육상운송서비스	1.05
162	원유정제처리제품	0.09	531	철도운송서비스	0.65
163	윤활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0.16	532	도로운송서비스	1.10
C05	화학제품	0.43	54	수상운송서비스	0.24
17	기초화학물질	0.25	540	수상운송서비스	0.24
171	기초유기화학물질	0.22	55	항공운송서비스	0.32
172	기초무기화학물질	0.38	550	항공운송서비스	0.32
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30	56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0.99
18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30	561	운송보조서비스	0.77
19	화학섬유	0.46	562	하역서비스	1.01
190	화학섬유	0.45	563	보관 및 창고서비스	1.04
20	의약품	0.63	569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1.18
200	의약품	0.62	57	우편 및 소화물전문운송 서비스	1.90
21	비료 및 농약	0.57	571	공영우편서비스	2.64
210	비료 및 농약	0.57	572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	1.45
22	기타 화학제품	0.47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4
221	도료 및 잉크	0.51	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8
222	비누 및 화장품	0.58	581	음식점 및 주점	1.08
229	기타 화학제품	0.37	582	숙박서비스	1.01
23	플라스틱제품	0.58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74
231	플라스틱 1차제품	0.51	59	통신서비스	0.58
239	기타 플라스틱제품	0.61	591	유, 무선 및 위성 통신서비스	0.57
24	고무제품	0.51	59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0.54
241	타이어 및 튜브	0.41	60	방송서비스	0.92
249	기타 고무제품	0.63	600	방송서비스	0.92
C06	비금속광물제품	0.64	61	정보서비스	0.66
25	유리 및 유리제품	0.50	610	정보서비스	0.66
250	유리 및 유리제품	0.51	62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기타 IT 서비스	0.79
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71	62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0.82
261	도자기 및 요업제품	0.80	629	기타 IT서비스	0.62
262	시멘트	0.53	63	신문 및 출판 서비스	1.19
263	콘크리트제품	0.71	630	신문 및 출판 서비스	1.17
2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70	64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1.01
C07	1차 금속제품	0.36	640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0.99
27	철강1차제품	0.36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70
271	선철 및 조강	0.40	65	금융서비스	0.58
272	열간압연강재	0.37	651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0.61
273	냉간압연강재	0.33	659	기타 금융중개기관	0.49
279	기타 철강1차제품	0.36	66	보험서비스	1.02
28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0.38	660	보험서비스	1.00
281	비철금속괴	0.22	67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	0.74
282	비철금속 1차제품	0.53	670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	0.73

29	금속 주물	0.69	L	부동산서비스	0.37
290	금속 주물	0.70	68	주거서비스	0.13
C08	금속가공제품	0.57	680	주거서비스	0.15
30	금속가공제품	0.58	69	기타 부동산서비스	0.66
301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0.66	691	비주거용 건물 임대 및 부동산 공 급	0.49
302	금속 단조, 야금 및 압형제품	0.62	692	부동산 관련 서비스	0.79
303	금속처리 및 가공품	0.5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01
309	기타 금속가공제품	0.56	70	연구개발	0.95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30	700	연구개발	0.95
31	반도체	0.20	71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19
310	반도체	0.20	711	법무 및 경영지원 서비스	1.17
32	전자표시장치	0.23	712	광고	1.23
320	전자표시장치	0.24	72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0.90
33	기타 전자부품	0.60	721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0.74
331	인쇄회로기판	0.62	729	기타 과학기술 및 전문 서비스	1.01
339	기타 전자부품	0.58	N	사업지원서비스	1.59
34	컴퓨터 및 주변기기	0.33	73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0.59
340	컴퓨터 및 주변기기	0.33	730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0.58
35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0.33	74	사업지원서비스	1.99
351	통신 및 방송장비	0.30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조경서비스	1.81
352	영상 및 음향기기	0.48	742	인력공급 및 알선	2.83
36	정밀기기	0.51	74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1.43
361	의료 및 측정기기	0.5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94
369	기타 정밀기기	0.50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94
C10	전기장비	0.60	751	공공행정 및 국방	0.92
37	전기장비	0.61	752	사회보험서비스	1.77
371	발전기 및 전동기	0.57	P	교육서비스	1.31
372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0.66	76	교육서비스	1.32
373	전지	0.42	760	교육서비스	1.32
374	전선 및 케이블	0.51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46
375	가정용 전기기기	0.56	77	의료 및 보건	1.08
379	기타 전기장비	0.78	770	의료 및 보건	1.08
C11	기계 및 장비	0.59	78	사회복지서비스	3.39
38	일반목적용 기계	0.63	780	사회복지서비스	3.40
381	내연기관 및 터빈	0.6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85
382	펌프 및 압축기	0.57	79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1.05
383	일반목적용기계 부품	0.64	790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1.04
384	산업용 운반기계	0.66	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0.81
385	공기 및 액체 조절장치	0.64	80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0.80
389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0.66	S	기타 서비스	1.27
39	특수목적용 기계	0.59	81	사회단체	1.86
391	농업 및 건설용 기계	0.60	810	사회단체	1.86
392	금속가공용 기계	0.67	82	자동차·소비용품 수리 및 개인서 비스	1.10
393	금형 및 주형	0.72	821	자동차 및 소비용품 수리서비스	0.97
394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0.45	822	개인서비스	1.31
39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0.70	T	기타	0.90
999	전 체				0.75

주) 소분류의 고용유발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하고자 하는 품목이 여러 가지로 소·중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중분류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한다.